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71,000,000	26,130,000
일반회계		681,500,000	20,445,000
특별회계		189,500,000	5,685,000
	공기업특별회계	46,500,000	1,395,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500,000	705,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000,000	690,000
	기타특별회계	143,000,000	4,29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4,438,000	133,14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111,000	63,33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740,000	22,2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3,360,000	100,800
	주택사업특별회계	825,000	24,750
	치수사업특별회계	16,255,000	487,65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782,000	113,460
	대지보상특별회계	300,000	9,00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8,965,000	2,968,95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1,900,000	357,0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4,000	9,72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482,123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6,815,000천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027,734천원, 내부유보금 4,639,389천원)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